

동악어문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동악어문학회(東岳語文學會, Dong-ak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국의 어문학에 대한 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한국의 어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역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 : 본회의 정회원은 한국어문학에 관심을 가진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지닌 자로 한다.
2. 명예회원 : 이 밖의 국내외 인사 중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며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회장이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신입회원 : 모든 신입회원은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뒤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그 자격을 얻는다.
4. 자료회원 : 개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는 자료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5년 기간을 한 단위로 하고 그 내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의무와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학술 활동과 본회에서 정한 사업에의 적극적 참여와 소정의 회비 납부에 대한 의무를 진다.
2. 본회의 정회원은 학회의 연구논문집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본회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자료회원은 자격 기간 동안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4. 본회의 정회원은 학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의견의 개진 및 표결의 권리를 지닌다. 단 편집위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투표권은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선출 시기 직전 회기 연도까지의 미납회비가 없는 정회원만이 갖는다.
5. 본회의 회원은 반드시 저자 정보(소속과 지위)를 정확하게 밝힌다.

제6조(회원 자격의 상실) 본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하거나 본회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회원은 이사회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구성) 본회에는 회장 1인, 감사 2인, 상임이사 및 지역별 이사를 둔다.

제8조(회장)

1. 자격 : 회장의 자격은 편집위원의 자격과 같다.
2. 선출 방법
 -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선출 절차
 - ① 정기총회의 출석 회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장 후보 1인을 추천한다. 이때 과반수의 추천을 얻은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 ② 과반수의 추천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추천 투표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이 중 더 많은 표를 얻은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3.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2) 회장은 편집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5. 유고시 : 회장의 유고시에는 편집위원의 자격을 지닌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자격을 대신한다.

제9조(감사)

1. 자격 : 감사의 자격은 가입한 지 2년이 넘고 선출 시기 직전 회기 연도까지의 미납회비가 없는 정회원으로 한다.
2. 선출 방법 :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이 무기명으로 후보자 1인을 추천하여 상위 득표자 2인을 감사로 선출한다.
3. 임기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본회의 예산 집행 및 기타 주요 업무를 감시한다.

제10조(이사)

1.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는 회장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제반 사무를 협의 운영한다.
3. 이사에는 기획이사 2인, 연구이사 2인, 출판이사 2인, 재정이사 2인, 정보이사 2인, 총무

이사 2인을 두며 그밖에 전공이사 3인(각 전공별 1인), 지역별 이사(국외이사 포함)를 둔다.

4. 이외에도 업무에 필요에 따라 총원 20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이사의 내용과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기구

제11조(총회)

1. 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1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4. 총회는 임원과 편집위원의 선출, 사업 활동 및 활동 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회칙의 개정, 기타 중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5.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회원의 가입 및 징계, 기타 본회의 제반 사업을 협의·시행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4. 이사회는 결정은 출석 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5. 이사회는 결정 사항은 사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6. 이사들의 업무는 상임이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3. 편집위원회는 연구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학회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을 책임진다.
4. 편집위원의 자격과 선출 방식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사업 및 연구 활동

제14조(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한국의 어학 및 문학에 대한 자료 조사, 수집, 연구.

2. 연 2회 이상의 전국 규모 학술발표대회 개최.
3. 연구 성과의 출판 및 보급.
4. 기타 한국의 어문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5조(분과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지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내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6조(연구논문집) 본회는 1년 3회 연구논문집을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 사항은 <연구논문집 발행 규정>을 따른다.

제6장 재정

제17조(내역)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비) 본회의의 회비는 연회비 또는 종신회비로 납부하며, 세부 사항은 <회비 및 재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의 사항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본 회칙은 1964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196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197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197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197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198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198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199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199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회칙은 199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회칙은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회칙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회칙은 200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회칙은 200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회칙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회칙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회칙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편집위원 등으로 함께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3)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2. 임무

- (1) 편집위원회는 연구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을 편집한다.

3. 편집위원 자격과 선출 방식

- (1) 자격 : 편집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본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지 2년 이상이 경과한 자.
 - ②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대학의 전임교원.
 - ③ 선출 시기 직전까지 최근 3년 동안 본회의 연구논문집이나 전국 규모의 학술지(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 교육부의 학술지 평가에서 B등급 이상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5년 동안 1권 이상의 학술서적(교재, 개설서 제외)을 출판한 자.
- (2) 선출 방법
 - ①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추천을 받은 6명,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5인 이내의 범위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때의 편집위원은 본회의 회원이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위 자격의 ②, ③항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단 이 결정은 반드시 총회와 이 사회에서 선출된 편집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이사회에서는 편집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정기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우편 또는 e-mail을 통해 공고한다.
- (3) 임기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구논문집 발행 규정

1. 명칭

연구논문집의 명칭은 『동악어문학』(東岳語文學,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으로 한다.

2. 출판 시기

- (1) 연구논문집은 매년 3회(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논문집의 원고 마감은 매년 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로 한다.

3. 논문 심사

(1) 심사 기준

- ① 투고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본 학회의 연구논문집에 게재될 수 있는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향후 3년간 학회지에 투고를 금한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모든 투고 논문을 대상으로 ‘학회지 게재 형식의 적합성’, ‘주제 및 연구 방법의 창의성’, ‘결론의 합당성’, ‘논리적 구성의 적절성’, ‘논문 제목의 적절성’, ‘학문적 기여도’ 등의 각 항목을 A, B, C, D 네 단계로 나누어 평가한 후,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게재 가’, ‘부분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반려’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 ④ 투고된 논문은 1차로 그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지명된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거나 특수 관계이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⑤ 저자 정보(소속과 지위)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심사 절차

- ① 3인의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를 종합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게재 가: 4점, 부분 수정 후 게재: 3점, 수정 후 재심: 2점, 반려: 0점)

- (가) 12 ~ 11점 : 게재가
- (나) 10 ~ 8점 : 부분 수정 후 게재
- (다) 7 ~ 5점 : 수정 후 재심
- (라) 4 ~ 0점 : 반려

단, 위의 판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정 후 재심” 이 2명 이상이거나, “반려” 가 1명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세부전공별 심의를 거쳐 심사 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위 기준은 2014년 2월 28일자로 개정하여 동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매년 1월 15일, 5월 15일, 9월 15일 이전에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등급 판정의 이유와 “부분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수정 세부 사항을 해당 연구자에게 학회 소정의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로부터 “부분 수정 후 게재”의 통보를 받은 연구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수정 보완 사항을 확인한 후,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④ 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 후 재심”의 통보를 받은 연구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호까지 재투고하지 않을 시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⑤ “반려”의 평가를 받은 자는 결과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 내용을 해당 세부 전공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다수결에 따라 “수정 후 게재”와 “반려” 가운데 하나로 판정을 내려야 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⑥ 편집위원회에서는, 위 3, 4, 5항의 결과를 판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외부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논문 투고 자격

- (1) 논문 투고는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 (2) 특별한 이유 없이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의 발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향후 2년간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 (3)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경우는 심사료가 면제되나 게재가 결정된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하지 않고 투고된 논문의 경우는 투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 결정된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투고된 모든 논문은 돌려받을 수 없다.
- (6) 심사료와 게재료의 액수는 내규로 정한다.

5. 논문 투고 절차와 요령

- (1) 논문투고자는 투고 논문을 전자 파일 형태로 학회의 공식 메일주소 (dongak1964@naver.com)로 매년 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 논문 게재가 최종 결정된 자는 해당 원고의 최종수정 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컴퓨터 디스켓이나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논문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말미에 해당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심사 기간), 심사완료일(게재결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논문 양식은 다음에 따른다.
 - ①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고문헌, 주제어, 국문초록, 영문주제어, 영문논문명, 영문초록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의 한국어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논문 체제는 반드시 논문 제목(논문 부제목)- 성명(소속 및 직위, e-mail)- 차례- 국문초록- 주제어-본문-영문논문명- 영문초록-영문주제어-참고문헌의 순서를 따른다.
 - ③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3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출판용 편집 30쪽을 초과할 경우 1쪽당 1만 원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한다.
 - ④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의거한다.
 - 「 」 단편 작품, 일반 연구 논문, 평론 등
 - 『 』 장편 작품, 작품집, 단행본, 신문, 잡지, 학회지 등
 - ‘ ’ 강조, 간접인용
 - “ ” 직접인용
 - 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관련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 (가) 국내서: 저자, 「논문」, 『저서』,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면수(-면.)
- (나) 번역서: 원저자, 번역자, 「논문」, 『저서』,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면수(-면.)
- (다) 영문 원서: 저자, “논문”, 저서(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면수(-면.)
- (라) 중국 및 일본 원서는 국내서에 준한다.

⑥ 국어학 및 국어교육(한국어교육) 관련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가) 출전을 밝히기 위한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보기]

가. 김길동(1981:78) (저자 및 출판 연도 표시의 경우)

나. (김길동 1981:78) (‘가’의 괄호 안의 표기의 경우, ‘김길동’ 뒤에 ‘,’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釋譜詳節 6:3a>

라. <月印千江之曲 上8b> (출전 표시의 경우)

마. 「用字例」 (책의 장 제목이나 논문인 경우)

(나) 주석의 경우 참조주는 가능한 한 ‘내각주’로 처리하고 내용주만 ‘외각주’로 처리한다.

·참조주: ‘-으며’는 기원적으로 ‘-음’과 열거를 나타내는 ‘-여’의 통합형으로 추정되는데(이기문 1972:125), 이 ‘-여’는 계사 ‘-이-’와 어말어미 ‘-어’의 통합형일 가능성이 높다(양주동 1965:218).

·내용주: 유아를 상대로 해요체나 합쇼체를 쓰는 것은 평범한 대화에서는 부자연스럽다.¹⁾

.....(본문
줄)..... 마지막

1) 유아 상대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동물 상대어가 있는데, 유아 상대어는 명사의 특성을 보이고 동물 상대어는 부사의 특성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

⑦ 참고문헌은 기본 자료, 단행본, 논문의 순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명의 가나다(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가)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관련 투고 논문의 경우 참고문헌은 다음에 제시된 양식과 같거나 유사하게 한다.

박광현, 「‘대학교’의 번역과 수용」, 『한국문학연구』 27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4, 260-280면.

김태준 편,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3, 논형, 2005.

Charles Taylor, *Heg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나) 국어학 및 국어교육(한국어교육) 관련 투고 논문의 경우 참고문헌은 다음에 제시

된 양식과 같거나 유사하게 한다.

南基心(1986),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國語學叢書 7, 탑출판사.

李基文(1955), 「語頭 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對하여」, 『震檀學報』 17집, 震檀學會, 187-258면.

Anderson, S. R.(1982), Where's Morphology, *Linguistic Inquiry* 13, 571-612.

Martinet, A.(1975), *Evolution des langues et reconstruction*, Paris: P.U.F.

- ⑧ 참고문헌에 들어간 단행본은 참고한 해당 면수를, 논문은 그 논문이 수록된 단행본이나 논문집의 해당 면수를 밝혀야 한다.
- ⑨ 투고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저자일 때에는 각 저자명을 병기하고, 공동저자가 아닐 때에는 논문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또는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 저자 등으로 구분한 뒤 저자명 뒤에 반드시 기입한다.
- ⑩ 논문의 투고 양식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6. 논문의 저작권(Copyright)에 관한 규정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 투고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본 규정은 동악어문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문,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저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 어문학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우리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들의 학회 활동 중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문화해서 윤리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능) 학회지 『동악어문학』과 학회 발간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와 판단, 그리고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 1) 윤리위원회는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문,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 3) 윤리위원은 이사 및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5인을 선임하고, 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 4)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5조(임기)

- 1) 당연직 구성인원의 임기는 각 직책의 임기를 따른다.
- 2) 선임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의 종료 때까지로 한다.

제3장 운영

제6조(대상) 본 위원회가 문제 삼는 연구 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위·변조와 표절, 중복 게재 등의 행위이다.

제7조(범위) 문제가 되는 행위는 다음 조항에 나열된 것으로 한정한다.

- 1)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용어, 분석 체계를 임의로 쓴 경우.
- 2)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고유한 아

이디어, 용어, 분석 체계를 임의로 쓴 경우.

- 3)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편의 글을 합편한 경우.
- 4)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사람을 공동 저자로 하는 경우.

제8조 (이해상충 방지) 논문 투고자는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관련 보고를 요구 받았을 때, 즉시 본 학회에 이해상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후라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 부정이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8조(회의)

- 1)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본 학회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위반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 2) 필요에 따라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서면 및 기타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보호)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의 조항을 따른다.

- 1)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나 문제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피제보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간주하여, 회원인 경우 향후 학회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2)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3) 피제보자에게는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심사와 집행

제10조(심사의 절차)

- 1)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2)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판정을 확정짓기 전에 피제보자에게 연구 윤리 위반 혐의를 알리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 4)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피제보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제보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5)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른 학회 활동 제한 내

용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6) 위원회는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저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제11조(학회 활동 제한의 종류) 연구 윤리 위반이 확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회 활동을 제한한다.

- 1) 해당자의 학회 제명.
- 2) 해당자의 일정 기간 학회 자격 정지.
- 3) 해당 논문 취소 및 학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4) 해당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해위 사실 통보.
- 5) 향후 5년간 학회지에 논문 투고 금지.

제5장 기타

제12조(기타)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